

사건기록 [] 열람 [] 등사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전화번호		
	사건과의 관계	수사종	[] 피의자 등(피의자, 피고소인, 피진정인,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)	
		진정·내사·시정·수사	[] 사건관계인(고소인, 고발인, 진정인, 피해자 또는 참고인)	
		불기소	[] 피의자 등의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[] 사건관계인의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	
관계	재판확정	[] 피고인 [] 변호인 [] 증인 [] 피고인의 보조인 []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[]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[]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		

사건기록	사건번호	기록종별	수사종, 불기소(혐의없음, 공소권없음, 기소유예, 기소중지, 참고인중지, 각하), 재판중(법원제출 전),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, 재판확정	
	피고인등			
	죄명	확정(처분)일	자	

신청사유	사실확인, 교도소 제출, 민사소송 이용, 변호사 사무실 제출, 별건고소, 항고, 재심청구, 학술연구(), 공익적 목적(), 기타()
------	--

신청부분※	①	④
	②	⑤
	③	⑥

부수부대수령인	성명
	주민등록번호
	연락처

위와 같이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(를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-	--------------

검정결과	허가	불허가	일부허가	일부허가 시 허가부분*
	인	인	인	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.

※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·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.

수수료 안내

1. 열람: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
2. 등사: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, 「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
3. 특수매체기록[도면, 카드, 녹음(오디오자료)·녹화(비디오자료)테이프, 영화필름, 슬라이드, 마이크로필름, 사진·사진필름, 전자문서 등]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

※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.

비 고 (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)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처 리 절 차

